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출석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88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인천□□고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2. 17.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1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31. 4교시 체육 수업시간에 피해교원에게 ‘고추
가 심심한데 전복 어디 갔냐’ 1)는 말을 하였다.

- 나. 피해교원은 2019. 11. 1. 청구인의 발언이 성적 모멸감 등을 유발하였다고 호소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1. 15. 청구인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9-20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1. 19.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 11. 25. 이 사건 처분을 알고서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성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교원이 이를 성적인 이야기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자성록(반성문)을 작성할 때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교원이 청구인의 행동을 보고 난 다음 교사 의견서의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여 피해교원이 옆에서 불러준 대로 사실과 다르게 자성록을 작성하였다.
- 나. 청구인은 피해교원에게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체육교사가 피해교원과의 대화를 제지하였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다른 학생들 수업시간에 이 사건 상황을 이야기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1) 청구인은 당시 피해교원이 아닌 친구들에게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XX 외롭네 전복없단 말이다 개XX야” 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발언은 체육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교원에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다. 청구인과 피해교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두통과 불면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했던 발언에 대한 의견이 다름에도 피해교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한 행위에 비하여 처분의 정도도 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해교원의 주장이 다르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도 청구인의 발언은 체육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자성록(반성문)에는 피해교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다른 체육교사가 피해교원과의 대화를 제지하였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다른 학생들 수업시간에 이 사건 상황을 이야기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피해교원이 느끼는 성적 모멸감, 청구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교원과 청구인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5조, 제18조

2. 판 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조 제2호에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굴욕감(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고).

- 다. 청구인은 피해교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교원의 주장 및 청구인이 작성한 자성록(반성문)을 보면, 청구인이 체육 수업시간에 피해교원에게 남녀의 성기를 빗댄 표현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 라. 또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교원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여 그 정상이 양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